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3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대통령령 제19464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으로, “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100분의 100(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다만, 여신전문출장소(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며, 동호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100분의 50(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여신전문출장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25)]”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나목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100분의 10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여신전문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고, 동목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100분의 5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100분의 5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여신전문출장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25)]”로 한다.

제8조의2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종전의 본문)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 1. 국민경제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16247호

관

부

2006. 5. 3. (수요일)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등을 하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대출등을 하는 경우

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다.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2호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동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월 전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중 “그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

2.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4조제1항제1호(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각

각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1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제1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조제4항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의2제2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5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제18조제2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제20조제5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금융산업

ㄱ

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4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

」”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조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정된 대차대조표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

구 분	요 건
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p>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소속 기업 중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p> <p>(4) 그 밖에 사기, 결탁, 서류의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구 분	요 건
2. 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 법인등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순자산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주요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5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등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순자산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비고 : 1. 순자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 법인등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법인등(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등에 한한다)이 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인수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p> <p>(4) 그 밖에 사기, 결탁, 서류의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인수자가 제1호 외의 내국 법인등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5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인수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등인 경우	<p>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나.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비고 :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 법인등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서에 지정하는 법인등(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등에 한한다)이 제4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허용(영 제5조제3항)

(1) 일반 은행·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의 설치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고, 일부 시·군·구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가 없어서 서민 및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에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을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 (3)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부제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 등(영 제9조)

- (1)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법인의 경우에는 80억원,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
- (2)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는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시의 대출한도금액(80억원)을 폐지하며, 대출 등의 한도 계산시에 정부·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하도록 함.
- (3) 자기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자기자본의 확충과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제재조치권자의 조정(영 제26조제1항제6호)

- (1) 상호저축은행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는 중징계성 제재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치할 필요가 있음.
- (2)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게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을 권한의 위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하도록 변경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3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